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북한 노동자 현황 연구*

2017년 유엔 대북제재 이후를 중심으로

이애리아**·박수성***

본고는 UN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확산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북한 노동자 활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러시아의 대북제재 동참은 외화가 절실한 북한과 저임금 노동력 수요가 넘치는 러시아 변경 모두에 여파를 동반하는 결정이었다. 2019년 노동자의 철수 기한에 따라 러시아 중앙 당국은 북한 노동자 비자 할당을 줄이고 기존 비자의 기한 연장을 불허해 대다수 북한 노동자의 귀환을 종용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협력을 요청하면서, 현지 체재 노동력의 잔류 가능 방안을 모색했다. 철수 기한 이후에도 러시아에 잔류한 북한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변화한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연해주 지역 노동 시장에 대처하며 편법적인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작업단 규모의 대폭 축소와 분산된 집단 노동 형태로의 변화 양상을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은 개별 노동자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조성된 지역 노동시장에서 '비싸지만 질 좋은 노동력'으로 여전히 환영받는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들은 개인 활동의 여지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일상과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주제어: 유엔 대북제재,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노동자 송환, 코로나19

* 본 연구는 2021년도 (재)통일과나눔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결과보고서 3장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북한 노동자: 삶과 노동의 변화'를 발췌 및 수정했음을 밝힌다. 다만 저자 이애리아의 러시아 현지조사는 자비로 수행했다.

** 일본 와세다대학교 지역·지역간 연구기구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1. 서론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핵·미사일 개발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상호 연계적인 대상이 되었다. 특히 중국과 함께 북한의 최대 인력 파견 지역인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는 파견 노동으로 확보한 외화가 핵개발 자금의 원천으로서 북한 체제 안보와 직결된다는 측면 외에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한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주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러시아 파견 노동자 문제를 다룬 국내외 연구를 보면, 국내의 경우 극동과 남북한 협력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러시아 측 연구의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결시켜 논의하는 특징이 있다. 국내 연구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뚜렷이 감소한 반면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의 구상 속에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3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거나¹⁾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북·러 간 인적 교류가 국가 주도보다 시장경제의 요구와 작동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접근,²⁾ 그리고 극동을 중심으로 한 북·러 간 경제협력은 중국에 대한 견제책이나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보완적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외화벌이와 자국 노동력의 대체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안보와 번영의 두 측면을 부각시킨 연구³⁾가 두드러진다. 대북제재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
- 1) 박지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서울: KOTRA, 2017); 한홍렬 외,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정세진,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한 시베리아 인문학의 학적 체계 구성: 지역학적 통섭과 정책 공간 연계』(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소, 2020).
 - 2) 이기태 외,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서울: 통일연구원, 2018).
 - 3) 현승수 외,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협력』(서울: 통일연구원, 2019).

동북아 접경지대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최근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저임금 노동력 수요로 북·러 간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잔류하며 편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하나 현지 조사의 한계는 아쉬운 부분이다.⁴⁾

현재 북·러 관계에 대한 러시아 측의 전망은 전적으로 국제 제재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⁵⁾ 하지만 극동의 경제에서 북·러·한의 경제협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관계 확대의 주요 장애물은 “북한 경제의 자체적 성격”에 있다⁶⁾는 지적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극동 지역을 통합하려는 계획에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의 보존이 중요하다⁷⁾는 지적이 공존한다. 즉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역내 다른 국가, 특히 북한 및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동반자 간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극동의 발전을 위해 이들 국가의 기술, 투자 및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⁸⁾ 한편, 비핵화 ‘달성의 방법과 과정이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침

4) 최영진, “코로나 시기 동북아 접경지대에 북한 노동자의 고용위험: 체류와 송환,” 『평화학 연구』, 제22권 4호(2021), 29~56쪽.

5) М.П. Кукла, “Реал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и КНДР,” *Ойкумена. Регионовед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2(2017), с.67.

6) Л.Е. Козлов, “Фактор КНДР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No. 4(2018), с.18.

7) В.Ю. Мишин, “Россия — КНДР: взаимный поиск путей интеграции. Возможности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сия и АТР*, No.2(2016), с.68~69.

8) Л. Забров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том 63, No.11(2019), с.114~121.

해해서는 안 된다'는 모스크바의 입장⁹⁾도 주목된다. 러시아는 극동이 '북한 노동자 유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희생해야 했던' 만큼 북한과 극동 경제의 발전 모두에 위협이 되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일방적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이 드러난다.¹⁰⁾

연해주는 북·러 간 지리적 인접성으로 양국 간의 다양한 협력을 대표해 왔으며,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 인력을 매개로 한 상호관계가 활발하였기에 러시아의 유엔 제재 이행 여부와 관련해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 활동과 이동은 국내외의 관심을 받았다. 연해주는 러시아 내에서 북한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노동자 철수 기한 전까지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가까운 비중이 북한 인력이었다. 귀환 이후 예기치 못한 유행병 상황에서도 1천 명 정도에 가까운 인력이 잔류하고 있어,¹¹⁾ 파견 노동자의 활동 변화 및 현지 노동 시장 변화 속에서 북한 노동자 활동과 위상에 대한 평가를 재검토할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현재 북한 노동자의 활동 추이와 변화 양상에 대한 관심과 조사는 유엔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한 1차적 기록이라는 점만으로도 시의성과 의미가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매개로 상호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확

9) Асмолов К.В. Захарова Л.В.,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 КНДР в XXI веке: итоги двадцатилетия,"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ружбы народов, Се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Т.20, No.3(2020), с.585~604.

10) 위의 글, с. 597.

11) 이애리아 외,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노동자』(서울: 통일연구원, 2017), 35쪽; "Около тысячи граждан КНДР остаются в Приморье из-за пандемии," *Интерфакс*, 2021.7.27., <https://www.interfax.ru/world/780943>(검색일: 2021년 7월 28일).

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향후 여건 변화에 따른 북·러 간 재협력 가능성과 관련지어 파견 노동 활동이 갖는 다층적 의미, 그리고 양국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 전망 등에 대한 논의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연해주로 파견되었던 북한 노동자들의 팬데믹 이후 상황에 대한 현지 조사는 2021년 하반기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접근법은 2014년 당시 및 이후 체계적인 현지 조사를 실행했던 본 연구팀의 결과를 노동자 송환 이후 상황에 대한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과 수집된 현지 문서자료 및 통계, 여러 언론보도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다. 팬데믹으로 현지조사가 제한된 연구 환경이었지만, 가능한 북한 노동자와 접촉하며 관찰과 면담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에 현지의 조사 협력자 및 관련 연구자들과 비대면 면담을 추진해 변화 상황을 추적한 후, 연구자가 1주일간 현지 방문 조사를 실행해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산출하고자 했다. 현지조사 기간 중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러시아 현지인과 노동자, 그리고 파견회사 간부를 만나 현황에 대한 상세 내용을 청취할 수 있었다.

2. 북·러 간 교류협력과 유엔 대북제재

1) 북·러 간 교류 및 협력 현황

북한은 2006년 핵무기 실험 성공 이후 지속적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은 북한은 추가 제재로 인해 외부 세계로부터 거의 고립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는 수차례 결의를 통해 북한 자본과의 합작 회사 설립, 석탄·철 등 북한의 주요 품목 수출, 석유 제품 수입, 그리고 북한인의 해외 노동에 제한을 가했다.

2014년부터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2016년 이래 일부 대북제재에 동참했다. 북·러 두 나라 사이에는 경제적 보완효과를 가지는 접점들이 있으나 국제적 제재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김정은 시대 북한에게 러시아는 대외무역 국가 순위에서 부동의 2위이지만, 광물과 섬유 등의 교역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2017년에 7784만 달러였던 북·러 간 교역액은 이듬해 3407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고 그해 러시아의 대북 수입액은 198만 3천 달러에 불과했다. 2019년 말 양국 교역액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해 약 4,8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북한의 수출액은 300만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4,490만 달러로 심각한 무역 역조였으며, 러시아 대외무역에서 북한의 비중은 0.0072%에 불과했다.¹²⁾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겹친 2020년과 2021년의 양국 간 교역액은 북한이 국경을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2020년 북한과 러시아 극동 지역 간 교역에서 북한의 수입은 1분기 824만 달러에서 3분기 120만 달러로 크게 줄어들고 4분기에는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북한의 수출은 3분기에 도기류(1천 달러)가 유일하다.¹³⁾ 2021년도 1분기 러시아 측 통계에서 북한은 교역 국가

12) 2019년 북한의 러시아 수입 중 2,720만 달러는 석유 제품이었다. 양국의 수출입 통계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file:///C:/Users/user/downloads/2019%20북한%20대외무역%20동향%20(3).pdf(검색일: 2020년 9월 30일) 참조.

13) 극동 지역 관세청(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2020년 통계, <https://dvtu.customs.gov.ru/folder/230468/document/270417>(검색일: 2021년

목록에 올라 있지 않았다.

북·러 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1990년대 말부터 기획된 세 가지 인프라 시설 프로젝트 역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북한철도의 건설, 한국에 천연가스와 전기를 공급하는 북한 내 가스 파이프라인 및 전력선 설치에 관심을 갖고 남·북·러의 협력을 기대했다. 북한이 핵을 통해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은 긴밀한 협력과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추진 기회를 박탈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전통적인 파트너지만 북한 수출 품목의 취약성, 정치적 요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 경험의 부족 등으로 무역과 경제 협력 관계에서 변동성이 높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노동력을 러시아로 유치하려는 양국 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연해주 지역은 대북제재하에서도 양국 간 외교 및 경제 교류의 통로이자 구체적 사업 추진 파트너로서 북한의 지속적인 접촉의 대상이다.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연해주와 북한의 무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북한무역관(Trade House)의 설립 논의다.¹⁴⁾ 이는 2018년 3월 북·러 경제협력위원회에서 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갈루시카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논의는 연해주 정부 측에 무역관 설립 부지 선정을 요청하면서 2019년까지 지속되었고, 북한 노동자 비자 이슈 및 2015년 양국 간 MOU를 체결한 두만강자동차도로 프로젝트 등 여타 프로젝트를 진척시키려는 기회로 활용되었다.¹⁵⁾

8월 10일).

14) “러시아 북한무역관(Trade House) 설립 통해 두만강 자동차도로 구체화 추진,”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2019.2.13.,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6/>(검색일: 2021년 8월 11일).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는 북·러 간에 지속적으로 다루졌다. 2018년 3월 회의에서 북한의 로두철 부총리가 “지난해 러시아에서 약 4만 명의 북한인이 일했는데 올해에는 제재 때문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며 러시아 측의 협조를 당부하자¹⁶⁾ 갈루시카 장관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근로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한 러·북 실무그룹이 구성됐다고 소개하면서 4월 실무그룹 회의에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같은 해 9월 13일 북한 측(김영재 대외경제상)과 연해주정부 간 회동에서 연해주 정부는 북한에 대한 노동 비자 할당량(쿼터)이 5천 매 확보됐다고 밝혔다.¹⁷⁾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동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북한 노동자들이 ‘우리를 위해 훌륭히 일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용한 해결 방안이 있음’을 밝힘으로써¹⁸⁾ 러시아

15) “Олег Кожемя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ом КНД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2019.1.19., https://www.primorsky.ru/news/156278/?sphrase_id=5359742; “Глава Приморья и генконсул КНД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бсудили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interfax-russia*, 2019.1.15.,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sec=1671&id=996813>(검색일: 2021년 8월 12일).

16) “18년 3월 러·북 경제협력위원회 이틀간 회의 마무리... “결산 의정서 서명,” 연합뉴스, 2018.3.22.,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2192000080>(검색일: 2021년 8월 12일).

17) 위 기사 및 “КНДР планирует открыть в Приморье торговый дом,”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2018.9.13., https://www.primorsky.ru/news/150461/?sphrase_id=5359742(검색일: 2021년 8월 12일). 연해주를 매개로 한 북·러 간 접촉은 UN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경제외교 관계 지속의 외부적 메시지로써뿐 아니라 대북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경제적 교류는 지속해야 한다는 러시아 측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 재개에 좋은 계기로 여겨지고 있다.

측의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 노동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법을 준수하며 규율이 있는 이들’로 ‘노동자 문제는 인도주의, 권리 실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조용하고도 (유엔의 결정과) 비대립적인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다’¹⁹⁾는 노동력 수용국 정상들의 발언은 러시아가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극동 개발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계속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 북한 노동자 체류 현황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97호를 결의한 직후 러시아는 북한 노동력을 유치하려는 그간의 노력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공식화했다. 러 외무부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유엔 결의가 적시에 이행될 것임을 밝히기 전인 12월 12일 러시아 노동부는 ‘취업허가를 이미 받은 이들은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나’ 2018년에 북한인에 대한 노동이민 쿼터는 배정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²⁰⁾

러시아 정부는 각 지역의 북한 노동자 쿼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기존 체류자의 체류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²¹⁾ 엄격한 관리

18) “По вопрос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есть "спокойные решения", заявил Путин,” *РИА Новости*, 2019.4.25., <https://ria.ru/20190425/1553040687.html>(검색일: 2021년 5월 15일).

19) “《Есть неконфронтационные решения》.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 возможности работы граждан КНДР в России вопреки требования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Фонтанка Ру*, 2019.4.25., <https://www.fontanka.ru/2019/04/25/080/>(검색일: 2021년 5월 15일).

20) “Северным корейцам не оставили шансов на Приморье,”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2017.12.12., <https://www.dv.kp.ru/daily/26768/3801180/>(검색일: 2021년 5월 20일).

〈표 1〉 북한인의 러시아 체류 현황(2016-2021)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1~7월)
북한인 체류 등록자 목적별	등록총수	29,930	27,647	18,601	42,706	3,632	4,448
	사업	-	-	-	-	-	154
	여행	1,072	1,554	2,035	16,613	256	95
	학업	191	186	2,610	10,345	2,609	3,708
	노동	27,417	23,892	8,845	7,465	753*	0
	사적목적	239	508	1,399	1,867	59	175
	기타	1,022	1,507	3,712	6,416	708	316

주: * 2020년 1분기 통계입(연간통계에서 노동 부분은 공란 처리되어 있다).

자료: “Отдельные показатели миграцио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распределением по странам и регионам(국가 및 지역별 러시아 연방 내 이주 상황 개별 지표),” 2018-2020 각 연도와 2021.1-7월 참조. <https://xn-b1aew.xn-p1ai/Deljatelnost/statistics/migracionnaya/item/> (검색일: 2021년 8월 31일).

를 시작했다. 그리고 기한이 만료된 노동자의 비자 연장을 불허해 귀환 마지막 날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이 줄을 잇게 되었다. 송환된 북한 노동자 규모만큼 연해주는 특히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 연방 노동부는 이미 합의했던 9천 명 이상의 2018년도분 북한 노동자 쿼터를 거부했고 신규 허가도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연해주 지사는 ‘그들의 송환은 연해주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면서도 비자 만료 시까지 기존 노동자의 체재 보장’밖에 약속할 수 없었다.²²⁾ 러시아가 지

21) “Власти Приморья не хотят прогоня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Newsru*, 2018.1.12., <https://www.newsru.com/russia/12jan2018/kndrprim.html>(검색일: 2021년 3월 31일).

22)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рабочим в Приморье дадут время заработать на дорогу домой,” *Городской портал Владивосток*, 2018.2.8., <http://gorodskoyportal.ru/vladivostok/news/news/42156582/>(검색일: 2021년 3월 10일).

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었던 상황에서도²³⁾ 연해주 지방은 오히려 중앙 당국에 8천 명에서 9,264명으로 쿼터 증가를 요구한 상태였기에 충격은 더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내무부가 발표한 러시아 내 북한인 체류 목적별 현황을 보면 대북 제재 이후 상황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노동을 목적으로 한 체류 신고 건은 2016년에 27,417건이었으나, 유엔 대북제재 이후인 2018년에 8,845건, 2019년에 7,465건으로 줄어들었으며, 2020년 1분기는 753건으로 확인된다.²⁵⁾ 제재 이후 노동자들의 철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2018년 러시아에서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은 북한 노동자가 30,023명에서 11,490명으로 줄었고,²⁶⁾ 노동자

23) 이런 상황은 북한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대북제재안이 나오기 직전인 2017년 11월에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북한 대외경제성은 2018년 북한 노동자의 수를 총 2만 5천 명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데 잠정합의한 바 있었다. “러시아 체류 북한 노동자, 4만 명에서 2만 5천명으로 감축,” KBS 뉴스, 2017년 11월 24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375273>(검색일: 2021년 3월 31일).

24) 쿼터 배분을 보면 2017년 당시 노동자들의 활동 부문을 짐작할 수 있다. 2018년 요청분은 분야별로 건설이 8,7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업이 235건, 일반 산업이 201건, 기타 97건이 농업과 선박수리, 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이었다. “Власти Приморья не хотят прогоня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Newsru*, 2018.1.12.

25) “Отдельные показатели миграцио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распределением по странам и регионам,” 2018~2020년 각 연도 참조. <https://xn-b1aew.xn-p1ai/Deljatelnost/statistics/migracionnaya/item/>(검색일: 2021년 8월 31일).

26) “Россия репатриировала 20 тысяч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из-за санкций ООН,”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9.3.26., <https://rg.ru/2019/03/26/iz-za-sankcij-oon-rabotaiushchie-v-rossii-i-kndr-severokorejcy-otpravleny-domoj.html>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Работа мечты”: чем занимаются рабочие из КНДР в России,” *BBC*, 2018.2.12.,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

철수 시한 직전인 2019년 11월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인이 16,012명까지 감소했다.²⁷⁾ 러시아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통해 2019년 12월 22일까지 이전의 비자 체제로 자국에 들어와 있던 북한 노동자가 1,003명이라고 밝히고, 이후 코로나 사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2020년 3월 10일 당시 511명이라고 보고²⁸⁾함으로써 500명가량이 철수 시점을 넘겨 돌아갔음을 시사했다.

2019년 말 북한 노동자들의 대거 귀환 행렬이 이어졌으나 교통편의 부족으로 지정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정도였다. 이에 송환일 종료 후에 잔류한 북한 노동자들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자 북한은 2020년 1월 말에 출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2월 4일자로 북·러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노동자의 출입과 외화벌이의 길을 자진해서 막았다. 북한 노동자 잔류는 교통편의 부족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 조치가 자국 노동자에게까지 예외 없이 적용됨으로써’ 나타난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²⁹⁾ 러시아가 북한 노동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만큼 511명은 노동비자 소지자가

2989901(검색일: 2021년 4월 21일).

27) “Куда ни Ким, всюду клин,” *Коммерсант*, 2020.9.16., <https://www.ommersant.ru/doc/4493063>(검색일: 2021년 7월 7일).

28) “러시아 ‘취업비자 보유 북한인 없어… 국경 봉쇄로 일부 체류,’ 미국의 소리(VOA), 2020년 3월 31일,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russia-north-korea-workers/6030182.html(검색일: 2021년 7월 7일).

29) “Посол РФ в КНДР: Россию не радует глубокая заморозка диалога Пхеньяна и Вашингтона,” *Интерфакс*, 2020.5.20., <https://www.interfax.ru/interview/709350>(검색일: 2021년 6월 16일). 러시아는 유엔 결의 2397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러 외무부 대변인은 강조한다. “러 외무부 “북한 노동자 약 1천명 남아있어…조만간 떠날 준비,” 연합뉴스, 2020년 1월 24일, <https://www.yna.or.kr/view/AKR20200124002700080>(검색일: 2021년 6월 30일).

아니라 임시 체류자의 신분으로서 코로나19 유입 방지 목적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직후 러시아에 계속 체류 등록을 한 북한인 3,600여 명³⁰⁾에 포함된다.

러시아연방 이민국의 자료를 인용한 러시아 언론 보도에 의하면, 3,600여 명 중에서 2021년 7월 20일 현재 연해주에만 969명³¹⁾이 체류하고 있으며, 목적별로는 ‘학업’이 619, ‘사업’이 50, 기타 공무 등이 275 등이다.³²⁾ 이를 근거로 하면 공식적으로 ‘노동’ 목적의 체류자는 없고, 대신 학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의 비중이 약 2/3나 된다는 부분이 주목된다.

3) 대북제재 이행과 대응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한 2017년 말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풍경은 사뭇 달라졌다. 러시아 정부에서 북한 노동자 쿼터를 배정하지 않자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비자가 아니라 기술연수비자,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발급받아 들어왔다.³³⁾ 2019년 12월 노동자 철수 기한이 지난 후 북한 노동자들이 유학생 비자를 이용하

30) “러, 지난해 북한인 3천6백여 명에 거주 허가... 전년대비 91% 감소,” 자유아시아방송(RFA), 2021년 2월 12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e-kh-02122021071501.html(검색일: 2021년 7월 7일).

31) 연구팀은 현지 조사 중에 1050~1100명이 체류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기도 했다.

32) “Около тысячи граждан КНДР остаются в Приморье из-за пандемии,” *Интерфакс*, 2021.7.27.

33) 2021년 8월 19일, B 씨와 인터뷰. 앞선 2019년 연구팀은 연해주 지역 조사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관광 비자나 어학연수 및 단기 기술 연수 등을 목적으로 러시아에 입국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는 등의 편법으로 러시아에 파견돼 노동 활동이 지속된다는 보도들이 이어졌다.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러시아에 30대 이하의 노동자를 계속 파견하고 있는데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유학생이나 연수 비자를 발급받아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³⁴⁾는 것이며, 탈북한 전직 외교관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다.³⁵⁾ BBC 방송 역시 2020년 초 러시아에 남은 노동자의 수를 약 2,500명으로 추산하면서 ‘단기 비자나 유학생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북한인의 수가 증가한 것’에 주목하고, 추정이긴 하지만 노동자와 학생비자의 깊은 관련성을 언급하는 등 유학생 문제를 연속적으로 다뤘다.³⁶⁾

연해주 소재의 북한 회사들은 자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에 발급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장기비자 대신 관광비자나 최대 1년간까지도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연수비자의 활용을 대체로 선호한다. 하지만 통계 추이나 법적 요건을 볼 때, 2019년까지 북한이 대북제재 돌파를 목적으로 노동자를 유학생으로 위장시켜 조직적으로 파견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다. 러시아 통계청이 발표한 자

34) “북, 편법으로 러시아에 노동자 파견 계속,” 자유아시아방송(RFA), 2020년 2월 5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e-02052021100641.html(검색일: 2021년 4월 19일).

35)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로 근무 중 2019년 9월에 탈북한 류현우 씨는 “러시아에는 유학생 비자를 받아 연가하는 방법으로 일부 노동 인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 류대사가 보는 북한,” 『동아일보』, 2021년 3월 12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312/105848583/1>(검색일: 2021년 5월 19일).

36) “안보리 제재로 북 해외노동자 러시아에 2500명 가량 남아,” BBC, 2020년 1월 20일, <https://www.bbc.com/korean/news-51144987>(검색일: 2021년 6월 5일). 기사에 따르면 유학생 비자 발급자는 2018년에 84명에서 2019년 10월에 146명으로 70%의 증가를 보였다.

료³⁷⁾를 보면 공식 통계로 확인되는 북한 유학생 입국자 수는 2018/2019, 2019/2020년 기준 2년 연속 1백 명 선이다. 이는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보면 미미한 수치인 데다 통계상 1년 사이에 유학생 수의 커다란 증가가 보이지도 않았다. 게다가 법적으로 2019년까지 유학생 신분으로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평일 노동 자체가 곧 불법이었다. 즉 유학생의 노동 활동과 관계된 러시아 기존 규정은 국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정규 학생에게만 취업을 허락하며, 구소련권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나 난민 및 임시 망명이 허가된 학생은 허가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으나 그 외는 취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³⁸⁾ 법규상 취업허가 없이는 유학생이 사실상 평일 노동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학생 신분으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는 본격적인 경제적 이익을 목적했다기보다 갑작스러운 노동자 파견 제재로 초래된 출입국 여건에서의 임시적 타개책이자 실험적 성격을 띤 시도의 하나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조사 과정에서 만난 한 북한이탈주민은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대북제재안이 통과된 후 비자 기한 연장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

37)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вне российских законов. Зачем они приезжают в Россию?,” BBC, 2020.12.28.,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55447145>;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20* (Москва, 2020), с.207, https://eng.rosstat.gov.ru/storage/mediabank/8IORJITH/year_2020.pdf(검색일: 2021년 6월 2일).

38)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студенту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в России?” (2017.6.2.), <http://legallabor.ru/sobytiya-i-informatsiya/116-kak-inostrannzomu-studentu-ustroitsya-na-rabotu-v-rossii>(검색일: 2021년 5월 20일). 유학생이 공휴일에만 일하는 경우는 취업허가가 필요 없다.

다. 매년 체류 기한 연장을 신고해야 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러시아 측은 노동비자 유효 기한이 임박한 이들에 대해 일체의 기한 연장을 불허하고 거주등록조차 거부하는 상황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은 사실상 러시아 측이 귀환을 종용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사업소들이 당장 귀환해야 할 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신속히 재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학업 비자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밝혔다.³⁹⁾ 유학생 신분으로 재파견은 나이가 40세를 넘거나 파견 기한이 5년 이상으로 긴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웠기에 군인을 노동자로 파견받는 사업소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은 유학생의 노동 활동을 허가하는 법적 변경 조치를 이끌어 내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2020년 8월 5일부로 러시아 기업들이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 학생도 고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변경되면서 전문대학교와 일반대학에 학업을 주목적으로 정규 등록한 외국인 학생에게 별도의 취업허가 발급 절차를 요구하는 요건은 사실상 완전 철폐됐다. 기존의 신고 절차나 학생 신분으로 노동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들은 여전하지만,⁴⁰⁾ 변경 전과 비교할 때 북한 유학생들이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북제재 이행과 북한 노동자 철수의 여파는 약 1만 명의 북한 노

39) 2021년 8월 19일, B 씨와 인터뷰.

40)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студенту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в России?”(2017. 6.2.)을 참조. 유학생은 전일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합법적 유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면허, 인증서 여권 등을 공증을 거쳐 사진 및 입국신고서 사본 등을 구비해 이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취업허가 관련 수수료(3,500루블)를 지불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따른다. 만약 이직 등으로 종사하는 전문 분야가 달라질 경우 허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동자 활동으로 그 비중이 가장 컸던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곧이어 닥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 공간에 변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12월까지 건설 노동력의 약 80%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던 극동⁴¹⁾은 ‘항상 노동력이 부족했고 현재 체재 중인 노동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 발생 직후 ‘1만여 명이 떠난 북한 노동력을 베트남과 인도 및 옛 CIS권 국가 출신자들로 보충하려고’ 애쓸 것임을 선언했다.⁴²⁾ 2019년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직항편이 개설됐다. 한 지역신문은 극동의 북한 노동력은 ‘중국인들도 (일하기를) 거절하는 노동현장에서 가장 저렴한 노동력으로 주로 (공익사업을 포함한) 예산 지원을 받는 시설물 건설, 주거용 건물 수리 및 건설, 어업 분야에서 수요가 많았기에’ 대체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⁴³⁾

극동개발부 고위관계자는 2020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극동에서 외국인 노동력이 3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특히 건설 회사들은 노동자의 50% 이상을 잃었다고 평가했다.⁴⁴⁾ 게다가 2021년 현재 전국적으

41) “Юрий Трутнев обещал преференции компаниям за отказ от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2020.12.23., https://vl.aif.ru/politic/yuriy_trutnev_obeshchal_preferencii_kompaniyam_za_otkaz_ot_inostrannyh_rabochih(검색일: 2021년 6월 10일).

42)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будет искать за рубежом новые источник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20.3.19., <https://rg.ru/2020/03/19/reg-dfo/dalnij-vostok-budet-iskat-za-rubezhom-novye-istochniki-rabochej-sily.html>(검색일: 2021년 6월 16일).

43) 위의 글.

44) “Трутнев: з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ужно бр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лату,” *Восток России*, 2020.12.25., <https://www.eastrussia.ru/news/trutnev-za->

로, 특히 극동 일대 건설 경기가 활황이다.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아르츰을 연결하여 스푸트니크라 불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제3 도시 건설을 비롯해 극동에 5개의 메가시티 건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⁴⁵⁾

연해주의 노동 시장은 인력 부족과 임금의 대폭적 상승을 경험했다. 2021년 6월 연해주 건설업체가 제시하는 평균 노임은 월 3만 8천 루블 수준이지만 실제 건설노동자 임금은 통상 5만 루블 이상에서 숙련자의 경우 8만 루블까지로 형성되어 있다.⁴⁶⁾ 임금 상승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문제라고 지적한 연해주의 건설업자들은 그 원인이 시장의 여러 요소와 관련되어 있고, 팬데믹 상황으로 해외 노동력 유입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그 이전부터 북한 노동력 입국을 막은 정치적 결정이 원인이라며 북한 노동자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⁴⁷⁾ 이같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와 같은 값싸고 질 높은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부각되었다.

inostrannykh-rabotnikov-nuzhno-brat-dopolnitelnuyu-platu(검색일: 2021년 6월 11일).

45)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ешили создать город-миллионник,” *Сноб*, 2021. 8.31., <https://snob.ru/entry/237379/>(검색일: 2021년 8월 31일).

46) 임금 수준은 현지조사 결과이며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https://ru.jooble.org/>)를 통해 통상적 수준 여부를 확인하였다. “Работа Ремонтно строительная бригада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https://ru.jooble.org/работа-ремонтно-строительная-бригада/Приморский-край>(검색일: 2021년 8월 30일).

47) “《Один рабочий из Кореи заменяет трех》: дефицит кадров в Приморье взвинтит цены на жилье,” *Московская Газета*, 2021.8.5., <https://mskgazeta.ru/ekonomika/odin-rabochij-iz-korei-zamenaet-treh-deficit-kadrov-v-primor-e-vzvintit-cenye-zhil-e-8408.html>(검색일: 2021년 8월 6일).

북한 노동자 철수 이후 연해주 전역의 노동시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철수한 북한 노동자를 대체할 국내외 신규 인력의 이동 및 활동이 제한돼 인력난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잔류한 북한 노동자들이 대북제재 영향 속에서도 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분위기이다.

특히 현재 러시아에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의 체류 상태는 임시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 특수 체류자 신분으로 변화였다. 이들은 귀국 수단이 생길 때까지 더 이상 노동비자 소지자가 아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2020년 4월 18일 대통령령 274호로 발효한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 해결을 위한 임시조치'의 결과다. 대통령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위험 확산의 위험과 관련해 귀환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의 체류를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으로 기한을 연장한 조치이다. 그리고 이렇게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기타 유형의 비자가 발급된다. 임시 체류 기한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유효했으나, 이후 몇 차례 체재 기간이 재연장돼 비자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⁴⁸⁾

48) “МВД объяснило, как приостановка течения сроков действия миграционных документов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на практике,” <http://legallabor.ru/sobytiya-i-informatsiya>(검색일: 2021년 6월 12일); “МВД информиру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временных мер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21.6.15., <https://rg.ru/2021/06/15/mvd-informiruet-o-prodlenii-sroka-dejstviia-vremennyh-mer-v-otnoshenii-inostrannyh-grazhdan.html>(검색일: 2021년 6월 16일)을 참조.

3. 파견 북한 노동자 관리 및 근로 여건

1) 사업소(회사) 운용 및 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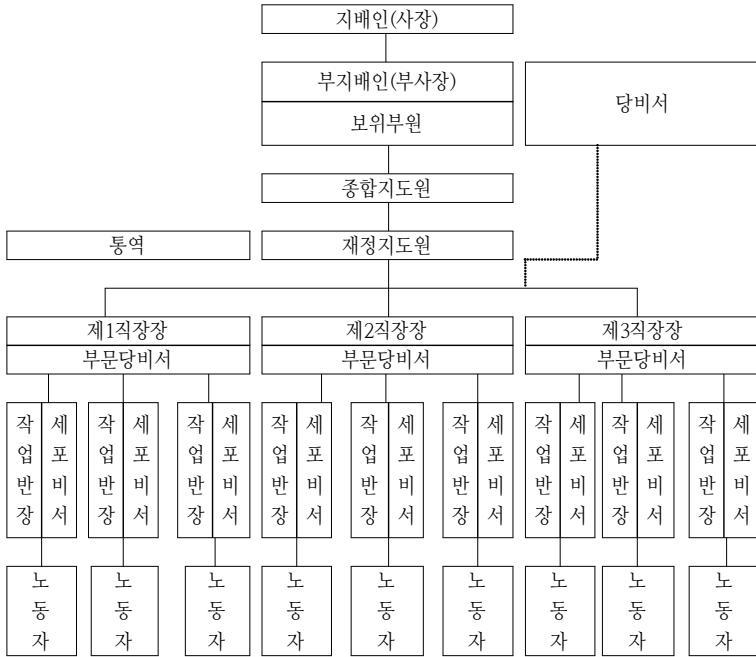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내 설립된 북한 사업소(회사)의 직접 관리를 받는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초청한 러시아 회사가 이들을 관리하며 일을 배당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 사업소는 러시아 측 회사와의 계약 관계 속에서 노동자에게 일을 할당하고 모든 생활을 직접 관리해 왔다. 즉, 현지 러시아 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쿼터 확보와 초청, 입국 절차를 진행할 때 관여하며⁴⁹⁾ 노동자에 대한 관리는 북한 사업소로 완전히 넘긴다.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에 도착한 직후부터 현지 북한 사업소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은 후 곧장 그 관리 체제로 들어갔다.⁵⁰⁾ 사업의 운영

49) 일반적으로 2016~2017년 당시 1인당 쿼터 확보 및 초청 준비까지 드는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600~800달러가 소요됐는데, 쿼터를 배정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은 이보다 적어 나머지 차액은 러시아 회사 관리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초청과 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는 인터넷상에서 외국인 쿼터를 받아주는 서비스의 요금을 제시했고, 모스크바와 인근 지역 쿼터 확보 수수료를 15,500~18,500루블(210~250달러)이라고 밝힌다. Рабочая виза в Россию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https://visa-russian.ru/trudoustroistvo-inostrannyh-grazhdan/rabochaya-visa-v-rossiyu.php>(검색일: 2021년 6월 12일).

50) 2014년 당시 나훗카, 블라디보스토크, 아르츰, 우수리스크 등 연해주 주요 도시에 외국인 투자회사로 등록된 북한 회사는 각 시별로 1~4개가 존재했고, 남강, 성공, 낙원, 젠코, 룡라도 등 주로 건설사 20여 개가 70여 개의 사업소를 운영했다. 연해주 지역 회사들은 건설과 수산 관련한 북한 내각 부처와 관련되며, 건설 분야는 수도 건설과 대외건설 등에서 나와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는 대외건설지도국에서 많이 파견되었다. 2021년 6월 25일, E 씨와 인터뷰.

〈그림 1〉 연해주 파견 북한 사업소(회사) 내 조직도



자료: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2015), 61쪽을 일부 수정했다.

과 노동자 활동은 사업소별로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연해주 일대의 북한 회사는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관의 관장 아래 놓여 있었다.⁵¹⁾ 각 사업소는 현지 사정과 사업 규모에 맞춰 조직됐고 한 사업소가 2~4개의 단위로 구성되는 ‘직장’ 체계를 이뤘다. 주로 아파트 단지 건설 등 큰 규모의 대상 건설을 맡았다. 규모가 제각각이긴 하지만 사업양이 많을 때는 회사 및 사업소별로 북한 노동자

51) 아무르부터 노보시비르스크에 이르는 시베리아 지역은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북한 대표부가 관리하며 노보시비르스크 이서 지역에 소재한 북한 회사에 대한 관리는 주러 북한 대사관에서 담당한다.

70~400여 명의 규모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소의 체계는 지배인(사장)에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군대식 위계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예로 들면 지배인(사장), 부지배인, 종합지도원 순서로 되어 있고 각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지도원, 당비서, 통역이 배치되어 관리 조직을 형성했다. 하지만 노동자 철수 이전까지 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는 직장 조직이었다. 직장장이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개별 직장은 3~4개의 작업반으로 이뤄졌고, 한 작업반에 12~15명가량이 배치돼 규모는 한 개 직장의 40명 내외였다. 작업반장은 노동자들에게 소대장이라고도 불리며 노동 활동을 직접 관리하고 매주 시행되는 작업반 내 계획분 총화를 담당했다. 이와 달리 당 직급인 세포비서는 ‘당생활 총화’, 즉 사상총화를 담당했다.

제재로 노동자 철수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사업소 조직과 그 관리의 형태는 변모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기존 회사 중에 활동을 멈춘 곳들이 생겨났다. 조사에 의하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사의 절반가량이 철수했다. 대표적으로 군인을 파견했던 남강이 철수했다. 2019년을 전후해 진출한 금릉은 20~30명 정도의 군인 출신 노동자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일반인 중심으로 운영된 회사 중에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은 성공, 목란, 철산, 젠코21 정도이다. 노동자 철수와 함께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연해주로 사업소를 이전한 회사도 있다고 하나 ‘6건설인지 8건설인지,’ 그리고 ‘현재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⁵²⁾ 2021년에 들어서면서 40~50명 정도의 노동자를 관리하는 사업소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52) 2021년 8월 19일 B 씨와 인터뷰와 6월 25일 E 씨와 인터뷰.

제재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2018년까지 사실상 변화 없이 꾸러졌던 사업소 조직은 2019년 말 노동자 철수 조치 이후로 규모가 축소돼 적게는 15명, 많은 경우도 50인 미만 정도다. 직장 관리체계였던 조직 운용도 변화해 노동자를 사업소의 간부들이 직접 관리하는 작업반 체제로 전환되었다.

2021년 하반기 연해주 현지 조사 결과에 기초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통역이 노동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작업반 지휘 역할을 맡고 있다. 통상적으로 노동자 15명당 1명의 통역이 임명된다. 이들은 러시아 회사들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대신 구입하며, 작업 현장을 다니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받는 등 현장 관리도 맡고 있다. 북한 사업소는 통역 이외에도 공사 현장에 책임자를 세워 노동자 관리를 이중으로 한다. 현장 책임자는 지정된 시간에 회사가 지급한 지정된 전화기로 부지배인, 재정지도원, 보위원에게 작업의 진행 상태와 노동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 노동 활동의 변화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 및 임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근로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7년 대북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내 소속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사업소가 정해 준 숙소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작업 현장에 매여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통상적으로 감당했다.

북한 사업소는 노동자 숙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현지 한인(고려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는 옷, 음식, 신발 등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공급했다. 본 조사팀이 관찰한 바로 잠자리는 2015년경 모 노동자 숙소의 경우 하루 100루블(1.5\$가량)을 지불했는데, 전기, 수도 샤워시설과 난방이 제공되며 위성수신기를 갖춘 곳이어서 TV 시청 등도 가능했다.

여권은 노동자들이 지참해야 하는 필수 문서인데 회사가 입국 심사가 끝난 직후 압수해 관리하기 때문에 사본을 소지하고 현장에 투입되었다. 사업소는 노동자의 수입 관리 못지않게 노동자가 외부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 노동자들이 작업을 나갈 경우에 군대식 위계질서를 부여하고 반드시 2~5명씩 조를 짜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조원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한다.

도착 초기에 노동자들은 '집체(대방)'로 불리는 노동 활동에 나가야 한다. 집체는 러시아 회사와 북한 회사가 일정한 작업량의 계약을 맺으면 해당 작업현장에 노동자들을 투입해 기한 내 일을 마치고 사업소가 대금을 수령하여 비용을 계산한 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대상노동⁵³⁾이라고도 부른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해주 노동자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집체 활동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현지 사정이나 물가 수준에 대한 지식 습득, 작업의 공정과 개인적인 기술능력 향상이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진다.

기술이 좋은 노동자의 경우는 집체 활동 중간에 소규모 작업단에 편입되기도 한다. 통상 통역 등이 '물어 온 일감', 즉 현지 러시아 업자나 개인과 북한 사업소의 통역이나 기타 관계자가 맺은 소규모 계

53) 대상은 북한 사업소(회사)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 회사(주로 러시아 회사)를 뜻한다. 회사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은 주로 북한 사업소에서 관리한다. 대규모 단지 등에 다수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체노동 혹은 국가대상이라고도 부른다.

약에 투입되기도 한다. 연해주와 극동은 노동자의 파견 선호 지역인데, 그 인기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회사 측과 정식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청부 활동이 용이하다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혹은 개별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 기업소와 러시아 기업이 체결하는 노동계약에 따른 근로 시간은 통상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지만 북한 노동자는 도급 일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거의 강제적인 장시간 노동 체제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노동자는 집계 노동을 통해 번 실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작업총화 혹은 계획분 총화 때에 알 수 있다.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분 총화를 통해 각 노동자가 일한 월수입과 그로부터 정해진 계획분을 제외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체 간에 작성한 계약서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 존재하고 신고까지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고정 임금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했다. 노동자에게 상세 내역을 알려 주는 관리자도 있으나 ‘이번 달은 계획분만 겨우 달성했다’는 식의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계획분이라고도 불리는 계획분⁵⁴⁾은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으로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활동을 사실상 규정짓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노동자들은 파견 후보자로 대기하는 시기부터 계획분의 필수 납부를 인지하고 있지만 파견 후 초과 노동을 통해 계획분을 제외한 급여를 자신의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2014

54)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계획화(planning)란 국민경제 내의 제반 계획의 작성과 실행, 계획수행 감독과 평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196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7~11쪽.

년 연해주 현지조사 당시에는 매월 240달러가 공식적인 ‘국가계획분’이었으나 2016년에는 300달러까지 인상되었다고 하는 등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게다가 관리자들이 요구하는 계획분 명목의 각종 부담금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다. 금액은 각 사업소마다 다르지만 통상 월 550~1200 달러까지로 2014-15년 당시 노동자들이 추가수입 등을 포함해 버는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에 육박해 있었다.

계획분의 액수가 높고 변동이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사업소에서 노동자들이 통고받는 계획분에는 북한으로 보내는 국가계획분 외에 숙박비와 식비, 관리비, 러시아에 내는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⁵⁵⁾ 여기에 계획분의 납부를 최대의 목적으로 한 회사는 직접 현장에 나가 별이를 하지 않은 상층 관리자 집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현장에서 관리자들의 계획분과 이들이 기대하는 소득까지 전적으로 현장 노동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이다. 처음에 계획분의 납부를 당연히 여기던 노동자도 국가 납세분, 파견비용에 관리자의 비용과 그들이 착복하는 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계층적 차별을 실감하게 되기 일쑤다. 계획분 금액의 변동은 우선 계절에 따른 일감의 수요 차이에서 기인한다. 계절적 영향을 받는 건설 노동의 특성상 일감이 적은 겨울에는 부담해야 할 계획분의 금액이 다소 낮아지나 일감이 많은 시기에는 1천 달러를 넘기도 하는 것이다. 사업소가 공사 대금 지급 상황을 이유로 금액을 변동하기도 한다. 즉 관리자들은 “러시아 측이 공사금의 지불을 미룬 바람에 이번에 계획분이 올라가게 되었다”며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정하

55) 이를 ‘과제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도 한다.⁵⁶⁾

해외 파견 초기에 임금의 절반 이상, 상황에 따라서는 전체를 넘어서기까지 하는 계획분은 북한 노동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계획분을 모두 채우게 될 경우 나머지 노동에 따른 수입은 노동자 개인의 것이 된다.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현지에서 개인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청부’라고 불리는 일종의 가외 노동이다. 청부는 러시아 회사와 사업소가 정식계약을 맺어서 작업에 투입되는 집체노동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 일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개인 가정집의 도배나 내부 수리를 하기 때문에 파견 노동자들은 러시아어로 수리를 뜻하는 ‘리몬트’ 혹은 ‘인테리어’라고도 부른다.

노동자들은 파견 초반에 사업소 작업에 투입되다 계획분을 충실히 납부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쌓이면 관리자의 허락 하에 청부를 나간다. 예외적으로 노동자 중에 귀국을 1년여 남겨놓고도 모아놓은 수입이 얼마 없는 절실한 경우에 관리자들이 청부를 허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부는 현지인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어 구사능력과 더불어 현지에 일감을 구해줄 인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둘 다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소 내의 통역에게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감을 구하기도 하고 현지의 고려인에게 중개를 부탁하기도 한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고려인들은 직접 일감을 연결해주거나 인터넷 벼룩시장에 구직 광고를 띄워 주기도 했다.⁵⁷⁾

56) 이애리아·이창호·방일권, “초국경 공간,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 신범식 엮음,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소지역주의 전략과 초국경 이동』(서울: 이조, 2020), 345~346쪽.

부업의 성격이 농후한 청부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다른 작업장에서 추가적으로 일하는 청부에 적극적으로 이었다. 노동계약서에 따른 일만 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과 주말 휴무가 보장된다지만 노동 현장에서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계획분과 개인별 상납금, 부대비용을 채운 후 개인 몫의 수입을 확보하려면 추가노동이 불가피하였다. 청부 일은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나 도급제로 일감을 받기에 일거리를 소개해 주는 단계마다 소개비가 지불되어야 하는 데다 규율상 금지된 외박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려면 회사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게 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부 일감이 알선되는데 일거리가 넘어가는 과정마다 알선자는 통상 알선 금액의 10%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갔다. 이와 같은 부패 구조로 인해 노동자들은 공기 단축을 위해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16시간이 넘어가기도 하는 과도한 노동을 마다않고, 쌀과 부식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노동 환경은 노동자의 건강 악화와 높은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청부 계약은 주로 도급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령 집수리 공사의 최소 비용이 10만 루블이라고 가정한다면 러시아 노동자는 통상 이익을 합쳐 한 달 공사기간에 20만 루블을 청구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보름 동안 10만 루블에 일을 마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현지 업자들은 정해진 노동 시간(9~17시)에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정해진 중간 휴식 등을 제공하면서 작업을 추진하므로 완공까지 소요 시간이 길고 비용도 높게 책정된다. 이와 달리 북한 노동자는 아침 8시부터

57) 대표적 예로 Farpost 홈페이지(<http://vladivostok.farpost.ru>)를 들 수 있다.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심지어 작업장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한다. 도급제가 아닌 일당제의 경우에도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은 러시아 노동자들의 2~3배에 달한다고 정평이 나 있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노동자가 3일간 집수리 작업에 1만 4천 루블을 받는다면 북한 노동자는 같은 보수를 받고 단 하루에 끝내버리는 식이다. 현지인 입장에서는 공사기간도 빨리 끝나고 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작업 품질도 높은 북한 노동자와 계약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⁵⁸⁾

2018년 무렵까지 연해주에서 청부로 작업할 경우 사업소에 납부해야 할 계획분은 약 800~1,500달러로 사업소나 활동 지역 및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청부를 통한 수입은 각 노동자의 기술력 수준이나 청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건에 따라 달라서 1년에 500달러 정도인 노동자가 있는 반면 드물기는 하지만 작업반장급 이상의 경우 1개월에 3,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 노동자들은 '3년 정도 일하고 200 달러 정도면 상당한 금액'으로 여긴다.⁵⁹⁾

2019년 12월 노동자 철수 기한 직전 시기에 연해주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은 기존 인력의 대폭적인 축소와 러시아의 쿼터 중단으로 인해 큰 규모의 집체 노동보다 청부 활동에 치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사업소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었기에 3개월 단기 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한 이들을 섞어 3~5명씩 조를 짜서 청부 노동을 나가도록 하거나 단독으로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것도 허락했다. 계획분의 부담이 커지고 관리도 강화됐다. 1주일 단위로 계획분을 납부

58) 이에리아 외, “초국경 공간,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 352쪽.

59) 2021년 6월 25일, E 씨와 인터뷰.

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 경우 수입은 일주일에 2만 8천 루블(444달러) 정도이며 계획분의 액수는 일주일에 약 2만 1천 루블(330 달러)로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은 1주일에 약 114달러 정도였다.⁶⁰⁾

코로나19로 귀국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연해주 일대에서 노동 활동은 '예전보다 더 분산되어 일'하되 집체 방식, 즉 대상 형식으로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현장에만 파견되는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규모가 큰 회사로 꼽히는 성공은 2020년 3월 중순에 작업을 재개했음이 확인되었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목란과 철산, 젠코21도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각 사업 주체(회사)는 자기들의 내부 규칙을 갖고 있으며 지도부의 상호 교류는 특별히 없고 노동 활동 역시 협력보다는 개별 사업소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노동자 철수 이전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도급제가 아닌 월급제 형태로 공사비를 받는 새로운 방식도 나타났다.

각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의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지 체류 노동자의 신분이 공식적인 노동을 할 수 없기에 북한 사업소들이 조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업소 간부들이 집체 방식으로만 일을 진행하는 이유 역시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지 고용인에 의한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 공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동자의 사업소 이탈에 대한 우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노동 공백과 수입 감소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노동자들의 개별경제 활동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이를 무마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주가 북한 사업소 간부와 친분이 있으면 노동자에 대한 간접적 감시도 가능하다.

60) 2021년 7월, D 씨와 인터뷰.

이에 따라 외부인이 기존의 일반적 접근법으로 회사나 일반 노동자와 직접 접촉하기 어려워졌고, 현재는 회사 통역과 접촉해야만 북한 노동자를 구할 수 있다.

한 노동자는 ‘지금은 비루스(바이러스)로 일할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통역이 일을 물어오기가 쉽다. 비루스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철수하지 않아도 돼 남은 노동자들은 좋아하는 편’이며, 외화벌이 ‘과제금으로 1인당 600달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⁶¹⁾ 다른 사업소인 성공소속의 노동자들은 계획분이 올라 매달 사업소에 6만 4천 루블(870달러 해당)을 내야 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이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소수가 함께 정부에 나서고 있는데, 회사 측은 일부 고용인에게도 급제가 아닌 일당을 요구하면서 노임을 월 10만 루블 정도에 맞춰 줄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이 역시 통역이 돈을 받아 회사에 납입하는데 개인에게는 8천~1만 루블(110~135달러 해당) 정도만 지불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과제금과 관련된 여러 현실과 상납을 파악하고 있으나 회사 지도부에 불만을 표시하지 못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목란’은 월 6만 루블, ‘철산’은 5만 루블 수준의 계획분을 받고 있다.⁶²⁾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에 잔류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기존보다 30~55%까지 국가납부액을 인상했다는 보도⁶³⁾도 나오고 있으나 노동자 철수 이전에도 이미 대도시 기준 국가계획분이 최대 1천 달러 정도였던 경우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61) 2021년 7월, D 씨와 인터뷰. 하지만 일부 노동자는 모든 임금이 회사 관할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개인이 돈을 쓸 수 없음을 알고 귀국을 희망하기도 하여 북한 영사관이나 관계자들이 이들을 달래 일을 계속하도록 설득하기도 한다.

62) 2021년 7월, A 씨와 인터뷰.

63) “러시아 파견 신규 북한 노동자, ‘50% 폭등’ 충성자금에 아연실색,” 데일리NK, 2021년 6월 9일, <https://www.dailynk.com/20210509-3/>(검색일: 2021년 7월 10일).

3) 일상 및 인식의 변화

북한 노동자 철수 시한이 지나고 코로나19 국면인 2021년 전반기 연해주에는 여러 사정으로 현지에 남게 된 기존 북한 노동자와 연수, 유학 등의 명목으로 교육비자를 소지한 파견자들이 섞여 활동 중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 철수 전과 비교하면 20~30대의 노동자 비율이 높아졌다. 한편 관광이나 단기 목적의 방문은 체류 기간이 대개 3개월까지로 한정돼 러시아에서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북한을 다녀와야 하고, 따라서 대북제재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항공요금 등 북한 노동자가 지불해야 할 부담이 30%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집 이사 등을 하기 위한 벌이는 해외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⁶⁴⁾

각 사업소는 대폭 축소된 인력을 작업반 체제로 편성해 일거리 수주와 정산, 개별 작업에 대한 관리까지 직접 진행하고 노동자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어서 노동자들은 사실상 ‘개인의 몫을 추가로 벌 수 있는’ 청부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연해주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는 ‘저렴한 임금에도 성실하고 질 좋은 노동자’에서 ‘값은 비싸지만 작업 속도가 빠르고 질이 좋은 노동자’로 바뀌고 있다. 제재 이행에 따른 노동자들의 귀국과 코로나로 인한 대체 노동력의 부재, 그리고 러시아 회사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 선호가 연해주에 잔류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일감을 찾아다녔던 북한 회사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작업반 규모의 대폭적 축소가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청부 활동의 불

64) 이애리아 외, “초국경 공간,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 339쪽.

혀로 일상이나 노동 환경은 북한 노동자 철수 이전의 집체 노동 상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코로나19 유행으로 초래된 현재의 특수상황은 노동자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작업 현장을 옮길 때조차 관리자가 동행을 한다.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건설 현장은 물론 여가 생활에서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이유가 됐다. 북한의 한 사업소는 북한 한의사들이 우수리스크에 집을 얻어 영업하던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현지인들을 치료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됐음으로 들면서 외부인과의 일체 접촉을 금지한 사례와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이용하던 현지 시장의 베트남인이 경영하는 이발소 출입도 확장을 이유로 갈 수 없게 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이동의 자유가 박탈된 환경은 노동자 개인들의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 봉쇄로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고, 청부가 불가능해 추가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해주에 잔류한 노동자들은 가족에 대한 염려가 크며,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노동자들 스스로가 근거 없는 의학 지식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높은 도수의 술로 대처가 가능하다며 매일 음주를 하는 노동자도 있고, 각종 민간요법이나 효력 있다는 소문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던 중에 연해주 지역에서 북한 영사의 아내가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코로나 방역에 비상이 걸리고, 파견 노동자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 간부들에게 긴급통지문을 보내 경각심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⁶⁵⁾ 실제로 이 사건 직후 북한 회사들은 파견 노동자

65) “러시아 주재 북한영사 아내 코로나로 사망,” 자유아시아방송(RFA), 2021년 7월

〈그림 2〉 북한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용한 약



자료: 연구자 촬영.

들에게 긴급히 임시방편 조치를 취했다.⁶⁶⁾ 8월 초부터 각 회사별로 노동자들은 러시아제 백신을 맞았다.⁶⁷⁾ 노동자들은 한 사람당 2회 5~6천 루블을 지불하고 스푸트니크 V 백신을 2회 접종했는데, 현지 중국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스푸트니크 라이트를 1,100루블에 접종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금액 차이가 컸다.⁶⁸⁾ 러시아 공시가인 1,942루블⁶⁹⁾

28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coronadeath-07282021075333.html(검색일: 2021년 8월 2일). 현지 조사 중 여성 사망자는 외교관 가족이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의 아내이며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 66) 북한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먹고 있는 ‘아르비돌(arbidol)’은 인플루엔자 및 기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치료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다. 코로나19 백신을 불신하는 일반 러시아인들도 이 약을 예방용으로 복용한다. 7월 말부터 회사는 북한 노동자에게 이 약과 꿀 1kg을 배급하고, 매일 아침 꿀을 계란에 섞어 약과 함께 복용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 67) 체료무호바야 거리에 위치한 연해주 백신예방센터에서 성공 회사의 노동자 50~60명이 1차 접종을 했고, 이 가운데 3명이 고열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한다. 2021년 8월, F 씨와 인터뷰.
- 68) 러시아는 자국민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외는 민간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접종해야 한다.

과 비교해도 북한 노동자들은 3배 이상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지만, 진료비와 검사비, 영어 증명서 발급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북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관심은 크게 핵과 인권 주제로 모아진다. 북한의 핵무력 증강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전자의 핵심이라면, 후자는 북한 주민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적용 및 제한된 자유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핵무력 강화를 핵심 국가정책으로 삼고 지속적인 핵 개발을 추진해 국제적 지탄과 장기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특히 2017년에 강도 높은 전면적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국가 재정 확충의 통로가 된 해외 파견 인력의 본국 송환 시한을 2019년 12월 22일로 명문화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의 유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오랜 기간 북한 이주노동력을 활용해 왔던 러시아가 노동자 철수에 관한 대북제재 준수 여부와 관련해 관심을 받았다.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러시아는 제재 동참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북한 노동력을 수

69) 러시아 보건부는 2020년 12월 외국인 백신 2회 접종 비용을 1,942루블로 통일했다.

Смерть супруг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нсула в Приморье: заграница обвиняет российскую медицину, *Vostok.Today*, 2021.8.23., <https://vostok.today/39766-smert-suprugi-severokorejskogo-konsula-v-primore-zagranica-obvinjaet-rossijskuju-medicinu.html>(검색일: 2021년 8월 25일).

용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역 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위협 요인이 된다는 가능성 때문에 갈등의 측면이 있다. 결국 러시아의 대북 제재 동참은 외화가 절실한 북한과 저임금 노동력 수요가 넘치는 러시아 변경 지역 모두에 적지 않은 여파를 동반하는 결정이었다. 2017년 대북제재로 예고된 노동자의 철수 기한을 따라 러시아 중앙 당국은 북한에 대한 노동자 비자할당(쿼터)을 줄이고 기존 비자의 기한의 연장을 불허하여 대다수 북한 노동자의 귀환을 종용했다. 이에 연해주 등 극동 지역은 중앙 당국의 조치에 북한 노동자의 잔류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고 북한도 나름대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현지 체재 노동력의 잔류 가능 방안을 모색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결정되자 노동자들은 관광비자와 유학비자 기술연수비자 등으로 러시아에 파견된 부분이 대표적이다.

철수 기한 이후에도 러시아에 잔류한 북한 노동자들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연해주 지역 노동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편법적인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현지 작업반 규모의 대폭적 축소와 청부의 금지 및 분산된 집단 노동 형태로의 변화 양상을 보인다. 북한 회사의 중간 관리층이 소실되고 간부가 직접 노동자를 관리하는 조직 변화도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은 개별 노동자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조성된 연해주 지역 노동시장에서 북한 노동력의 가치는 더욱 높아져 '비싸지만 질 좋은 노동력'으로 여전히 환영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 개인 활동의 여지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일상과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 문제는 단순히 대북제재 대상이나 인권의 잣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할 분야

라 할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돼 있고 자력갱생 노선을 걷고 있는 북한이 전통적인 우방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한 것은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못했으나 노동자 파견 문제를 매개로 향후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 노동정책 연구로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를 경험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이행경제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방안과도 접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접수: 7월 5일 / 수정: 8월 4일 / 채택: 8월 16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박지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서울: KOTRA, 2017).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이기태 외,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서울: 통일연구원, 2018).

이에리아 외,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노동자』(서울: 통일연구원, 2017).

정세진,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한 시베리아 인문학의 학적 체계 구성: 지역학적 통섭과 정책 공간 연계』(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소, 2020).

한홍렬 외,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현승수 외,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협력』(서울: 통일연구원, 2019).

2) 논문

이에리아·이창호·방일권, “초국경 공간,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 신범식 엮음,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소지역주의 전략과 초국경 이동』(서울: 이조, 2020), 309~366쪽.

최영진, “코로나 시기 동북아 접경지대에 북한 노동자의 고용위험: 체류와 송환,” 『평화학연구』, 제22권 4호(2021), 29~56쪽.

3) 신문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 류대사가 보는 북한,” 『동아일보』, 2021년 3월 12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312/105848583/1> (검색일: 2021년 5월 19일).

4) 기타 자료

2021년 6월 25일, E 씨와 인터뷰.

2021년 7월, A 씨와 인터뷰.

2021년 7월, D 씨와 인터뷰.

2021년 8월 19일, B 씨와 인터뷰.

2021년 8월, F 씨와 인터뷰.

“18년 3월 러-북 경제협력위원회 이틀간 회의 마무리... “결산 의정서 서명,” 연합뉴스, 2018년 3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2192000080> (검색일: 2021년 8월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file:///C:/Users/user/Downloads/2019%20북한%20대외무역%20동향%20(3).pdf(검색일: 2020년 9월 30일).

“러시아 북한무역관(Trade House) 설립 통해 두만강 자동차도로 구체화 추진,”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2019.2.13,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ews/786/>(검색일: 2021년 8월 11일).

“러시아 파견 신규 북한 노동자, ‘50% 폭등’ 충성자금에 아연실색,” 데일리NK, 2021년 6월 9일, <https://www.dailynk.com/20210509-3/>(검색일: 2021년 7월 10일).

“러 외무부 “북한 노동자 약 1천명 남아있어...조만간 떠날 준비,” 연합뉴스, 2020년 1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4002700080>(검색일: 2021년 6월 30일).

“러시아 주재 북한영사 아내 코로나로 사망,” 자유아시아방송(RFA), 2021년 7월 28일, https://www.rfa.org/korea/in_focus/coronadeath-07282021075333.html(검색일: 2021년 8월 2일).

“러, 지난해 북한인 3천6백여 명에 거주 허가...전년대비 91% 감소,” 자유아시아방송(RFA), 2021년 2월 12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e-kh-02122021071501.html(검색일: 2021년 7월 7일).

“러시아 체류 북한 노동자, 4만 명에서 2만 5천명으로 감축,” KBS, 2017년 11월 24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375273>(검색일: 2021년 3월 31일).

“러시아 “취업비자 보유 북한인 없어...국경 봉쇄로 일부 체류,” 미국의 소리

(VOA), 2020년 3월 31일,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russia-north-korea-workers/6030182.html(검색일: 2021년 7월 7일).

“북, 편법으로 러시아에 노동자 파견 계속,” 자유아시아방송(RFA), 2020년 2월 5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e-02052021100641.html(검색일: 2021년 4월 19일).

“안보리 제재로 북 해외노동자 러시아에 2500명 가량 남아,” BBC, 2020년 1월 20일, <https://www.bbc.com/korean/news-51144987>(검색일: 2021년 6월 5일).

2. 국외 자료

1) 논문

Асмолов К.В. Захарова Л.В.,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 КНДР в XXI веке: итоги двадцатилетия,”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ружбы народов Се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Т.20. No.3(2020), с.585~604.

Забровская Л.,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том 63. No.11(2019), с.114~121.

Козлов Л.Е., “Фактор КНДР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No.4(2018), с.18~24.

Кукла М.П., “Реал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и КНДР,” *Ойкумена. Регионовед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2(2017), с.61~71.

Мишин В.Ю., “Россия — КНДР: взаимный поиск путей интеграции. Возможности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сия и АТР*. No.2(2016), с.62~71.

2) 기타 자료

“Власти Приморья не хотят прогоня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Newsru*, 2018.1.12., <https://www.newsru.com/russia/12jan2018/kndrprim.html>(검색

일: 2021년 3월 31일).

“Глава Приморья и генконсул КНД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бсудили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interfax-russia*, 2019.1.15.,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sec=1671&id=996813>(검색일: 2021년 8월 12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2020 г.,” <https://dvtu.customs.gov.ru/folder/230468/document/270417>(검색일: 2021년 8월 10일).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будет искать за рубежом новые источник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20.3.19., <https://rg.ru/2020/03/19/reg-dfo/dalnij-vostok-budet-iskat-zarubezhom-novye-istochniki-rabochej-sily.html>(검색일: 2021년 6월 16일).

“«Есть неконфронтационные решения».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 возможности работы граждан КНДР в России вопреки требования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Фонтанка.Ру*, 2019.4.25., <https://www.fontanka.ru/2019/04/25/080/>(검색일: 2021년 5월 15일).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студенту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в России?,” 2017.6.2., <http://legallabor.ru/sobytiya-i-informatsiya/116-kak-inostrannomstudentu-ustroitsya-na-rabotu-v-rossii>(검색일: 2021년 5월 20일).

“КНДР планирует открыть в Приморье торговый дом,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2018.9.13., https://www.primorsky.ru/news/150461/?sphrase_id=5359742(검색일: 2021년 8월 12일).

“Куда ни Ким, всюду клин,” *Коммерсант*, 2020.9.16., <https://www.kommersant.ru/doc/4493063>(검색일: 2021년 7월 7일).

“МВД объяснило, как приостановка течения сроков действия миграционных документов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на практике,” <http://legallabor.ru/sobytiya-i-informatsiya>(검색일: 2021년 6월 12일).

“МВД информиру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временных мер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21.6.15., <https://rg.ru/2021/06/15/mvd-informiruet-o-prodlenii-sroka-dejstviia-vremennyh-merv-otnoshenii-inostrannyh-grazhdan.html>(검색일: 2021년 6월 16일).

-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ешили создать город-миллионник,” *Сноб*, 2021.8.31., <https://snob.ru/entry/237379/>(검색일: 2021년 8월 31일).
- “«Один рабочий из Кореи заменяет трех»: дефицит кадров в Приморье взвинтит цены на жилье,” *Московская Газета*, 2021.8.5., <https://mskgazeta.ru/ekonomika/odin-rabochij-iz-korei-zamenyat-treh-deficit-kadrov-vprimor-e-vzvintit-cenyne-zhil-e-8408.html>(검색일: 2021년 8월 6일).
- “Около тысячи граждан КНДР остаются в Приморье из-за пандемии,” *Интерфакс*, 2021.7.27., <https://www.interfax.ru/world/780943>(검색일: 2021년 7월 28일).
- “Олег Кожемя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ом КНД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2019.1.19., https://www.primorsky.ru/news/156278/?sphrase_id=5359742(검색일: 2021년 8월 12일).
- Отдельные показатели миграцио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распределением по странам и регионам, 2018–2020*, 2021.1–7., <https://xnblaw.xn-p1ai/Deljatelnost/statistics/migracionnaya/item/>(검색일: 2021년 8월 31일).
- “По вопрос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есть “спокойные решения,” заявил Путин,” *РИА Новости*, 2019.4.25., <https://ria.ru/20190425/1553040687.html>(검색일: 2021년 5월 15일).
- “Посол РФ в КНДР: Россию не радует глубокая заморозка диалога Пхеньяна и Вашингтона,” *Интерфакс*, 2020.5.20., <https://www.interfax.ru/interview/709350>(검색일: 2021년 6월 16일).
- ““Работа мечты”: чем занимаются рабочие из КНДР в России,” *ВВС*, 2018.2.12.,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42989901>(검색일: 2021년 4월 21일).
- “Работа Ремонтно строительная бригада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https://ru.jooble.org/работа-ремонтно-строительная-бригада/Приморский-край> (검색일: 2021년 8월 30일).
- “Рабочая виза в Россию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https://visa-russian.ru/trudoustroistvo-inostrannyh-grazhdan/rabochaya-visa-v-rossiyu.php>(검색일: 2021년 6월

12일).

“Россия репатрировала 20 тысяч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из-за санкций ООН,”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9.3.26., <https://rg.ru/2019/03/26/iz-za-sankcij-oon-rabotaiushchie-v-rossii-i-kndr-severokorejcy-otpravleny-domoj.html>(검색일: 2021년 4월 20일).

“Северным корейцам не оставили шансов на Приморье,”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2017.12.12., <https://www.dv.kp.ru/daily/26768/3801180/>(검색일: 2021년 5월 20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вне российских законов. Зачем они приезжают в Россию?,” BBC, 2020.12.28.,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55447145>(검색일: 2021년 6월 5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рабочим в Приморье дадут время заработать на дорогу домой,” *Городской портал Владивосток*, 2018.2.8., <http://gorodskoyportal.ru/ladivostok/news/news/42156582/>(검색일: 2021년 3월 10일).

“Смерть супруг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нсула в Приморье: заграница обвиняет российскую медицину,” *Vostok.Today*, 2021.8.23., <https://vostok.today/9766-smert-suprugi-severokorejskogo-konsula-v-primore-agranica-bvinjaet-rossijskuju-medicinu.html>(검색일: 2021년 8월 25일).

“Трутнев: з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ужно бр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лату,” *Восток России*, 2020.12.25., <https://www.eastrussia.ru/news/trutnev-za-nostrannykh-rabotnikov-nuzhno-brat-dopolnitelnuyu-platu>(검색일: 2021년 6월 11일).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20*(Москва, 2020), https://eng.rosstat.gov.ru/storage/ediabank/8IORJITH/year_2020.pdf(검색일: 2021년 6월 2일).

“Юрий Трутнев обещал преференции компаниям за отказ от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2020.12.23., <https://vl.aif.ru/politic/yuriy-trutnev-obeshchal-preferencii-kompaniyam-za-otkaz-ot-inostrannyh-rabochih>(검색일: 2021년 6월 10일).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Russian Primorsky Territory: After the 2017 UN Sanctions

Lee, Aelia(Waseda University)-

Park, Soo Su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this study I examine the impact of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activitie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Primorye (Primorsky) region of Russia. Russia's participation 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as a decision that would have serious repercussions for both North Korea, which is in dire need of foreign currency, and the Russian Far East, which is in high demand for low-wage labor force. In line with the withdrawal deadline for North Korean workers announced in the 2017 UN resolution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oscow has reduced North Korean worker visa quotas and urged the return of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workers, refusing to extend existing visas beyond their expiration dates.

North Korea continued to request Russia's cooperation and explored

ways to allow the existing North Korean labor force to remain. Those workers that remained after the withdrawal deadline continue to work expediently. They were forced to respond quickly to the changing conditions in foreign worker policies and local labor markets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he activities of the remaining North Korean workers show signs of a drastic reduction in the scale of local working groups and a change to a dispersed form of collective labor.

The COVID-19 situation is being exploited as a tool for tighter controls on individual workers. Daily lives and working environments of North Korean worker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collective labor situation before December 2019. Amidst the conditions of the regional labor market created und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North Korean workers in Primorye are still welcomed as a “high-quality labor force despite the high costs,” but they are experiencing a change in daily life and consciousness in a greatly reduced space for individual activities.

Keywords: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n labor, North Korean worker, dispatch to Russia, repatriation of workers, COVID-19.